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4. 20.수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2. 03. 31. 성북구청장 제출(의안번호 475호)

나. 회부일자: 2022. 04. 0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【2022. 04. 11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호형 복지문화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하게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출산장려사업 중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0조 4호, 제27조)
-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성북 온가족 행복망 운영의 근거 규정 신설(안 제25조제1항 후단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
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
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6조의2(교통약자의 이동지원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동성)

가. 제정취지 등

-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인 영유아 양육가정의 이동서비스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 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.
- 2020년 기준 서울시 출산율은 0.64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고 성북구는 0.676명으로 평균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나, 성북구 출생아수는 2015년 대비 42%, 출산율은 47%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.

< 최근 5년간 성북구 출산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>

<연도별 성북구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>



※ 자료: 통계청 인구동향조사(출생아 수, 합계출산율, 2015~2020)

나. 주요내용

- **안 제20조제4호 및 안 제27조**는 성북구 출산장려 사업에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 서비스 지원규정을 추가하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의료·건강관리·육아지원시설 방문 등 영유아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(성북 아이맘 택시)¹⁾추진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< 서울시 자치구 유사사업 현황 >

구 분	광진구 (광진맘택시)	강동구 (아이맘택시)	은평구 (아이맘택시)	노원구 (아이편한택시)
사업시행	2021.5월	2021.8월	2020.8월(최초시행)	2021.8월
이용대상	임산부 24개월 이하 영아	임산부 24개월 이하 영아	임산부 24개월 이하 영아	임산부 24개월이하 영아
대상인원	약 2,200명	약 3,500명	약 7,000명	약 7,000명
지원금액	세대당 연 10만원	세대당 연 6만원	1인당 10회	1인당 10회
운영형태	i.M.택시 (550대)	i.M.택시 (550대)	관내업체 계약운영(8대)	노원어르신행복주식 회사 위탁운영(5대)
사업방식	제한경쟁입찰 (수의계약)	민간위탁	제한경쟁입찰 (수의계약)	민간위탁
예 산	220,000천원	2 10,000천원	465,120천원	240,805천원
이용시간	365일 24시간 (평균대기시간 10분 이내)		평일 8:30~18:00 주말 8:30~13:30	평일 8:30~18:00 주말 8:30~13:30

- 2022년 본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 전용택시 이동서비스 지원 사업대상에 ‘임산부’ 및 ‘영유아 가정’이 포함되어 있었으나, 개정안은 ‘영유아 양육가정’ 으로 계획이 수정됨. 이는 서울시의 ‘임산부 교통비 지원’ 사업이 2022년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수혜대상을 영유아로 한정된 것으로 보임.

1) 「성북 아이맘 택시」 추진개요

- 사업시행 : 2022년 7월~12월
- 사업대상 : 관내 24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- 대상인원 : 3,972명(0세 1,920명, 1세 2,052명)
- 예상인원 : 1,000명(3,792명 × 이용률 약 50%× 6개월)
- 사업내용 : 의료·건강관리·육아지원시설 방문목적으로 영유아 동반 외출시 이동서비스 제공
- 지원내용 : 1세대 당 연10만원 이용 포인트 지원
- 이용방법 : 전용앱을 통한 신청 및 승인, 이용 후 앱을 통해 증빙자료 제출
- 추진방법 : 제한경쟁입찰
- 소요예산 : 103,000천원 (전액 구비)

< 성북구 연령별 영유아 현황 >

(단위 : 명)

구분	합계	0세	1세	2세	3세	4세	5세	6세
영유아	17,510	1,920	2,052	2,209	2,454	2,631	3,001	3,243
비율	100%	10.9%	11.7%	12.6%	14.1%	15.1%	17.1%	18.5%

※ 자료: 2021.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주민등록

○ **안 제25조의 후단 신설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온가족 행복망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**

- 행정안전부에서는 각급기관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의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웹사이트 총량관리를 통해 유사·중복되거나 이용률이 낮은 웹사이트를 통폐합 운영하도록 하되, 법령상 웹사이트 구축·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음.
- 현재 성북온가족 행복망 운영은 구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가족행복 서비스 정보제공, 공동육아 공간 대관 등 관리 뿐 아니라 저출산 대응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구청 대표 웹사이트와 통합 운영하는 것보다 독립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.

다. 종합의견

○ 본 개정안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등2)

2)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3. 안정된 주거생활
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5. 직장과 가정의 양립
6. 음란물·유혹가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

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고, 개정안을 통해 출산 저하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통약자”란 장애인, 고령자, 입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
제16조의2(교통약자의 이동 지원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2022. 4. 20.수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2. 03. 31. 성북구청장 제출(의안번호 476호)

나. 회부일자: 2022. 04. 0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【2022. 04. 11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호형 복지문화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초등단계의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며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공적 돌봄시설로,
-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지역주민 및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, 다양한 연계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하기 위하여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의거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위탁대상 현황

1) 시 설 명 :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

2) 소 재 지 :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29길 101 3층(삼선동3가)

3) 시설규모 : 132.38m²(약40평)

4) 아동정원 : 30명

5) 공간구성 : 돌봄활동공간(소그룹실, 공동체활동실 등), 사무실, 조리실 등

○ 위탁기간 :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

○ 수탁자격 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

- 비영리민간단체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단체
- 사회적협동조합은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기관으로 가능

○ 위탁방법 : 공개모집 후 수탁기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

○ 위탁사업의 범위 :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업무 일체

-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설물 및 재산관리
-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한 사업 등

다. 참고사항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 :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- 추진필요성

-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전환하는 구립삼선동꿈나무키움돌봄센터의 운영 연속성을 유지하고, 이용아동의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및 맞벌이가정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보편적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,
-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센터 이용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로 하며,
-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등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동성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‘우리동네 키움센터’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“민간위탁 조례”라 함) 제4조제3항³⁾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우리동네 키움센터 11호점이 2022년 7월 이후 신규 설치 예정임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,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.

< 대상시설 >

유형	위치	규모	정원 (명)	종사자	개소시기 (예정)	비고	현재용도
일반형	보문로29길 101, 3층 (삼선동3가)	132.38㎡	30명	2명	‘22.07.이후	임차	구립삼선동 꿈나무키움미 돌봄센터

※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제1차 공간확정 심의 결과 선정 통보(市→區, 2022.3.25.)

- 민간위탁하려는 ‘우리동네 키움센터’(이하 “키움센터” 라 함) 운영에 관한 사무 내용과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음.

1.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업무 일체
2.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설물 및 재산관리
3.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

3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제3항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<우리동네 키움센터 11호점 소요예산>

(단위 : 천원)

구분	면적 (㎡)	정원 (명)	총계	국비	시비	구비 (운영비)	소요예산
성북 11호점	132,38	30	270,140	52,622	209,118	8,400	-리모델링: 80,000천원 -기자재비: 20,000천원 -임차비: 39,800천원 -운영비: 18,600천원 -인건비: 111,740천원

다. 법적근거 및 민간위탁 사무 여부 검토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⁴⁾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온종일 돌봄 조례” 라 함) 제11조제1항⁵⁾에 구청장이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,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.
-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⁶⁾에 따르면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

4) 「아동복지법」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5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

- 11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**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아동복지법」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6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전문성 및 노하우가 요구되므로 키움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됨.

라. 위탁기간 및 선정방법의 적정성 검토

- ‘키움센터’의 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7),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7조 및 제10조제2항8) 규정에 의거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7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8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7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(이하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.

제10조(계약체결 등)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4. 20.수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2. 03. 31. 성북구청장 제출(의안번호 447호)

나. 회부일자: 2022. 04. 0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【2022. 04. 11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호형 복지문화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라 설립·운영하는 박물관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발전 및 성북구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4조)
- 개관 및 관람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9조)
- 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5조)
-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~제19조)
- 자료수집실무위원회 및 자료평가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~제23조)
-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24조~제28조)
-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9조~제31조)
-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2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동성)

가. 제정취지 등

- 본 제정안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하는 성북구 박물관의 관리·운영에 통합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본 제정안은 성북구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34개의 조문 및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제정안 제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, 박물관 시설 및 업무,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
- 제2장 개관 및 관람은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,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, 관람시간 등 기본적인 운영 사항을 비롯하여 관람 제한, 행위 제한 등 운영상의 제한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.
- 제3장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안 제10조부터 제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, 현재 성북선잠박물관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의해 선잠박물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.
- 제4장 자료의 자료 수집은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박물관의 자료구입과 취소, 자료의 기증 및 기탁자료의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제5장 자료수집실무위원회 및 자료평가위원회는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자료수집 및 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수집실무위원회, 자료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- 제6장 자료의 관리는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자료관리관 등을 지정하여 전시자료의 관리를 위해 수장고 관리, 자료의 대여 방법 및 자료의 분실, 훼손, 도난 등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가입 및 변상책임에 관한 근거조항 등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.
- 제7장, 제8장은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교육·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해 활동비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제9장 보칙은 안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 준용규정 및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부칙의 경우, 안 제2조에 의해 기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폐지하며, 안 제3조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안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같음토록하고 있음.

마. 종합의견

- 본 제정안은 성북근현대문학관 건립에 맞추어 기존 「서울특별시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 성북구 박물관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 기준과 전시자료 수집 등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